

# 공사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가. 공 사 명: 2026년 [공주]국도32호 영정2교 보수보강공사
- 나. 위 치: 영정2교(공주시 신봉면 영정리 일원)
- 다. 공사개요: 표면보수 390.8㎡, 단면보수 12.2㎡, 신축이음 교체 58.8m, 부대공 1식
- 라. 추정금액: 금245,400,000원(도금액 금198,800,000원 관금액 금46,600,000원)
- 마. 기초금액: 금198,800,000원(추정가격 180,727,273원 / 부가가치세 18,072,727원)
- 바.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 다. 지역제한 / 총액계약 / 단년도 대상 공사입니다.

## 3.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 견적(입찰)서 접수기간: 2026. 7. 9.(목) 10:00 ~ 2026. 7. 15.(수) 10:00
- 나. 개찰일시: 2026. 7. 15.(수) 11:00
- 다. 개찰장소: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공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철근콘크리트공사)을 면허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5. 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라. 본 공사는 아래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낙찰자는 특허권자와 별도 협약 필요)

| 특허번호            | 특 허 명                    | 특허 보유자     | 비 고 |
|-----------------|--------------------------|------------|-----|
| 특허 제10-2133010호 | 방수방식을 포함하는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공법 | 제이피이엔씨(주)  | 도 급 |
| 특허 제10-2771748호 | 측면보강 브라켓 공법(SRB공법)       | 웅진엔지니어링(주) |     |

##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이어야 합니다.
-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1]「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7. 공동계약 : 해당없음

## 8. 현장설명

-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구조물관리팀(041-635-7617)**

## 9. 견적(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10. 공사 경비 정산 안내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1,665,382원, 국민연금보험료 2,200,43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18,831원 퇴직공제부금비 1,065,474원, 안전관리비 14,749,488원**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 정산요령

-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 ②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 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943,565원을** 공사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제반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일기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법 제4조,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3.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 의무 사항

-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 나.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 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약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약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약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바.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 사.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아.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기타사항

- 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하고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 고용을 권장합니다.
-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날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시방서 및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 사.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사용안내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임대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계획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 **서무팀(041-635-7603)**
  -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 **구조물관리팀(041-635-761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8.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재무관**

##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 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1]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법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법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

서 약 자 : 0000 대표 홍길동(인)

